

2020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개요

직렬(직류)	계급	담당예정업무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시설 (건축)	지방시설 서기보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건축분야 시설사업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편성 기초자료 조사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업무 - 건축분야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2명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시설 (일반토목)	지방시설 서기보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토목분야 시설사업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편성 기초자료 조사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토목분야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시설공사 시공평가 관련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1명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공업 (일반기계)	지방공업 서기보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설계공사업무 조사, 계획, 집행감독 - 기계설비, 소방(기계) 관련 시설사업 승인 신고 및 민원업무 - 기계설비, 소방(기계) 공사 하자처리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1명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합 계			4명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까지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19.4.17. 시행)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㉞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

○ 성별: 제한없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 거주지제한(아래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거주기간 합산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 제1항에 따름

나. 자격요건(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직렬(직류) [직급]	자격 요건	
시설(건축) 9급	○ 아래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 관련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건축 관련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설 (일반토목) 9급	○ 아래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토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상 토목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토목 관련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토목 관련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렬(직류) [직급]	자격 요건	
	국가기술포용자격을 위한 자격증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공업 (일반기계) 9급	<p>○ 아래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포용자격을」 상 기계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포용자격을」 상 기계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계 관련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기계 관련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포용자격을 위한 자격증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케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다. 우대조건(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직렬(직류)	우대 조건(가점 부여)
시설 (건축)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시설 (일반토목) 공업 (일반기계)	2.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 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함)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 응시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은 제외함 ※ 직무관련분야 : 채용예정 직급의 담당 예정 업무

※ 우대 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우대조건에 따른 가점은 항목별로 각각 적용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시험위원들이 협의·결정함

다.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4. 시험일정

시행계획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3. 9.(월)	3. 23.(월) ~ 3. 25.(수)	4. 7.(화)	4. 9.(목)	4. 17.(금)	4. 20.(월)

※ 공고 및 발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에 게시하며, [합격여부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0. 3. 9.(월) ~ 3. 22.(일)

【우리 교육청,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에 게시】

나. 접수기간: 2020. 3. 23.(월) ~ 3. 25.(수) 18:00까지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1137), 전화: 032-420-6513

라. 접수방법: 우편접수(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유효함)

※ **코로나19** 관련으로 응시원서 접수는 **우편접수로 제한함**

※ 등기우편 발송 전 반드시 담당자(☎032-420-6513)에게 사전 유선연락 후 응시원서를 발송하시기 바람(**익일특급 등기우편 발송**)

※ 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 상의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 발송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봉투에 “지방공무원 채용서류 재증” 명기>

마. 응시 수수료: 5,000원(응시수수료 동봉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자격증 등 원본이 유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단,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5. 자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필수 (해당자)
6.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의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 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상근직, 비상근직(시간제) 여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해당자
7.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필수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초본 확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주민등록 초본 제출 시, 제출 생략 	해당자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필수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필수
11.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해당자

7.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을 준용
- 나.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기타

- 가. 1인당 1개 직류에 지원 가능(복수지원 금지)
- 나.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법령을 준용합니다.
- 다. 재공고: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나 선발예정 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한 것으로 간주
-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32-420-6513)로 문의바랍니다.

※ 별지 서식

순번	별지 서식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응시원서 제출 미제출
2. 이력서 제출 미제출
3. 자기소개서 제출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미제출
5. 자격증명서(응시자격) 제출 미제출
6. 자격증명서(우대조건, 해당자) 제출 미제출
7.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8. 주민등록초본 제출 미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 미제출
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 미제출
11.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일

성 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기술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3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직렬)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직렬)	
성명	(한글)	(한자)	
2020년 3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직렬):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및 직렬을 기재함
 - 응시직급: 지방시설서기보 또는 지방공업서기보
 - 응시직렬: 시설_건축, 시설_일반토목, 공업_일반기계 중 선택 기재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응시수수료 : 5,000원(9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1.				
응시 번호	※ 미기재	응시 분야	※ 예시 지방시설취직기보 (시설-일반토목)	성명

2. (,)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관련분야 실무경력 사항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 경력: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사항만 기재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성명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휴먼명조 13P 흑백, 줄 간격 160mm, 용지여백 좌·우 20mm, 상 20mm, 하 1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0mm)
- 지원동기, 관련분야 수행경험,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직무수행계획서

- A4용지 5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휴먼명조 13P 흑백, 줄 간격 160mm, 용지여백 좌·우 20mm, 상 20mm, 하 1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0mm)
-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등 채용예정 업무에 대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기재 금지(불필요한 내용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2020. 3. . 작성자 :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교육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3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3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p align="center">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p>	<p align="center">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p>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 align="center">2020. 3. . 성명 : (서명)</p>	<p align="center">2020. 3. . 성명 : (서명)</p>